울산광역시중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

[시행 2014.10.06] (제정) 2014.10.06 훈령 제191호

> 관리책임부서명 : 안전총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: 290-4080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, 관리 등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영상정보처리기기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로,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(이하 "통합관제센터"라 한다)에서 통합 관 리하는 기기를 말한다.
- 가. "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: Closed Circuit Television)"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 상정보를 녹화·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
- 나. "네트워크 카메라(Network Camera)"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·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·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
- 2. "영상정보"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(光)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.
- 3. "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"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.
- 4. "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"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하여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.
- 5. "영상정보 연계"란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수신 하는 것을 말한다.
- 6. "통합관제센터"란 생활 안전, 법규위반 단속,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,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·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.
- 7. "정보주체"란 영상정보에 의해 알아 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울산광역시중구(이하 "구"라 한다)에서 구축·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·이용·제공되는 영상 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제4조(전담부서의 지정) 통합관제센터의 구축·운영,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·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통합관 제센터 소관부서를 전담부서로 한다.

제5조(책임관의 지정)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에 관한 업무의 총괄책임관은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.

- ② 설치목적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책임관은 소관업무 부서장으로 한다.
- ③ 총괄책임관은 통합관제센터 운영·관리,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·관리 등 제반업무에 대한 협의조정,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위원회 설치·운영, 개인영상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.
- ④ 운영책임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,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 다만,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예산확보 및 설치는 전담부서에서 하며, 현황관리,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은 소관부서에서 한다.

제6조(영상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) ① 울산광역시중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영상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 등에 관해「개인정보 보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, 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(이하 "지침"이라 한다)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,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- ③ 수집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 구청장은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.

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등

제7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)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를 위해 다른 법령 또는 관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- 1.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은 통합관제센터로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고,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- 2. 방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려는 부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제8조(의견수렴)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,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영 제2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, 이해관계인,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 다만,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9조(안내판의 설치)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,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영 제24조 및 지침 제43조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
제10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·운영에 대한 점검)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, 지침 제52조에 따라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3장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등

제11조(통합관제센터의 역할) ①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·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.

② 범죄 및 재난·재해 발생 등 긴급 상황 시 유관기관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2조(통합관제센터의 운영·관리 방침 수립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·관리 방침을 수립하여 야 한다. 다만, 영 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

- 1.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목적 및 운영 방향
- 2. 통합관제센터에 통합·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 현황
- 3. 전담조직 및 기능, 담당업무, 근무체계
- 4.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(관리책임자, 운영시간, 실시간 관제의 범위 등) 및 영상정보 관리 방안
- 5.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
- 6.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(출입통제, 접근권한,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안) 등에 관한 사항
- 7.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·제공 등에 관한 사항
- 8.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
- 9.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

제13조(인력 확보 등)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직·경찰직 공무원과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③ 구청장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사회안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자원 관리 및 각종 사건·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속기 관의 경찰공무원을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.
- ④ 구청장은 관할교육감에게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요청하여야 한다.

제14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)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·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어린이, 여성, 노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 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5조(관제의 범위)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 관제하여야 한다. 다만, 실시간 관제를 통하여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16조(권한의 수임) 구청장은 경찰서, 교육기관 등 다른 기관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·연계하여 관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 부터 권한을 수임 받아 총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17조(관제요원의 근무) 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,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- 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「근로기준법」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③ 관제요원이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건·사고 및 재난·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, 해당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제18조(출입자 통제 등)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출입통제(제한)구역으로 지정하고,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하여 야 한다.

- ②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구청장은 근무자의 근무 교대 시 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 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.
- ④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구청장은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19조(운영위원회 구성 등)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 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통합관제센터의 운영·관리 방침 마련, 심의
- 2. 통합관리 예산 또는 인력 협의 조정
- 3. 통합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요원 선발 자격 기준 심의
- 4. 그 밖에 통합관리 및 영상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 심의·조정 등
- ③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통합관제센터담당 국장(개인정보관리책임자)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 원 중 호선한다.
- ④ 당연직 위원은 통합관제센터업무담당 부서장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목적별 운영부서장과 관할 경찰서 담당과장, 관할 교육청 담당과장으로 한다.
-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.
- 1. 주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울산광역시중구 내 시민사회 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
- 2.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
- 3. 그 밖에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
-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.

제20조(운영위원회 운영) ① 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

-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. 간사는 통합관제센터 전담부서 담당주사가 맡는다.

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21조(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)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, 외부에 위탁할수 있다. 다만,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수 없다.

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26조에 따른다.

제22조(교육의무)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제요원에 대해(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23조(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)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이내로 보관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후 30일 이상 경과 시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삭제할 수 있다.

- 1.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2.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
- 3.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② 경찰 등 유관기관에 제공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, 반환된 영상정보는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.

부칙<2014.10.6>

제1조(시행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「울산광역시중구 CCTV 설치·운영 규정」은 폐지한다.